

세법연구 06-08

주요국의 자녀세액공제와 시사점

2006. 11

전병목 · 조찬래

세 법 연 구 센 터

 한국조세연구원

목 차

I. 배경	9
II. 외국의 자녀세액공제제도	10
1. 미 국	10
가. EITC 수급 자격요건	11
나. 제도의 운영	13
다.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EITC	17
2. 영 국	18
가.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CTC)	18
나.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 WTC)	21
3. 캐나다	24
가. 적용대상	26
나. 급여체계 및 운영방식	26
다. 전달체계 · 급여지급 방식	28
4. 호 주	29
가. FTB 급여액	31
나. 급여지급 방식	35
5. 뉴질랜드	35
가. 가족수당(Family Support)	39
나. 가족세액공제(Family Tax Credit)	39
다.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40
라. 부모세액공제(Parental Tax Credit)	41
마. 제도운영 방식	42
6. 독 일	43
가. 자녀세액공제	43

나. 가족수당(Family benefits)	44
7. 이탈리아	45
가. 자녀세액공제	45
나. 가족수당(Family Allowance)	46
III. 시사점	50
참고문헌	52
<부록> 기타 국가들의 자녀세액공제제도	54
1. 오스트리아	54
가. 가족수당	54
나. 자녀양육수당	55
다. 자녀세액공제	55
2. 아일랜드	56
가. 가족수당	56
나. 육아 수당	56
다. 자녀세액공제	56
3. 스페인	57
가. 가족수당(Family benefits)	57
나. 자녀양육공제	58
4. 포르투갈	58
가. 가족수당(Family benefit)	58
나.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61
5. 노르웨이	61
가. 가족수당(Family Benefit)	61
나. 자녀양육수당(Child-care benefits)	62
다. 편부모 가정에 대한 수당(Lone Parent Benefits)	62
라. 아동양육비용의 공제	64

6. 슬로바키아	64
가. 가족수당	64
나. 육아수당	65
다. 자녀세액공제	66
7. 헝가리	67
가. 가족지원수당	67
나. 자녀양육수당	68
다. 자녀세액공제(tax credit for children)	70

표목차

〈표 1〉 EITC 신청을 위한 규칙	12
〈표 2〉 EITC 급여체계 및 급여산정방식 변천과정	14
〈표 3〉 EITC 수급자 수와 급여액(1975~2003년)	16
〈표 4〉 EITC제도의 어제와 오늘	16
〈표 5〉 주정부 EITC제도	17
〈표 6〉 각 구성요소에 따른 연간 급여액	19
〈표 7〉 CTC 급여액(2004~2005년)	20
〈표 8〉 근로세액공제(WTC) 각 구성요소에 따른 연간 급여액	23
〈표 9〉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WTC 급여액(2003~2004년)	24
〈표 10〉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WTC 급여액(2003~2004년)	24
〈표 11〉 CCTB 급여(2002~2003년)	27
〈표 12〉 부양자녀의 자격조건	31
〈표 13〉 Part A 가족 조정후 과세소득(가족 ATI) 한도(2004년)	32
〈표 14〉 Part A의 급여액(2004년)	32
〈표 15〉 Part A의 수급기준(2004년)	33
〈표 16〉 자녀 나이별 수급대상 소득금액	34
〈표 17〉 Part B의 최대 급여액(2004년)	34
〈표 18〉 연간세전 총소득에 포함되는 항목	37
〈표 19〉 가족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	37
〈표 20〉 소득과 자녀 수에 따른 가족수당, 자녀세액공제, 부모세액공제 (2004년 4월 1일~2005년 3월 31일)	38
〈표 21〉 가족수당(Family Support) 수급기준	39
〈표 22〉 자녀세액공제 수급기준 가족소득	41
〈표 23〉 부모세액공제액 수급기준 가족소득	42
〈표 24〉 각 자녀 수별 총세액공제액(2004년)	45

〈표 25〉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소득금액이 15,494유로 이하인 가정에 대한 자녀세액공제(2004년)	46
〈표 26〉 자녀가 없는 경우 결혼한 가정에 대한 가족수당(월/유로)	47
〈표 27〉 한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월/유로)	47
〈표 28〉 편부모에 대한 가족수당(월/유로)	48
〈표 29〉 부양가족의 수에 따른 기준금액 조정 지수	49
〈부표 1〉 자녀의 연령별 지급금액	54
〈부표 2〉 자녀 수에 따른 소득요건 및 수당한도	58
〈부표 3〉 자녀별 세액공제금액	58
〈부표 4〉 소득계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	60
〈부표 5〉 자녀의 연령별 및 소득계급별 급여지급액	60
〈부표 6〉 2004년 기준 편부모가정에 대한 아동보육급여의 한도액	63
〈부표 7〉 가족급여액(Amount of Family Allowance)	68

그림목차

[그림 1] Federal Earned Income Tax Credit(2004년)	13
[그림 2] 캐나다 National Child Benefit Initiative의 구조	25
[그림 3] CCTB와 NCBS 급여체계(2002~2003년)	27
[그림 4] 1995~96년부터 2003~2004년 까지의 NCBS 수급가구에 대한 연방정부 지출	29
[그림 5] 가족 ATI에 따른 Part A 급여액	33

I. 배경

- 자녀세액공제제도는 저소득가구의 자녀부양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운영
 - 지원방법으로 조세와 재정정책이 이용될 수 있으나 조세제도와 연계된 제도는 재정정책보다 비용 효율적
 - 성인에 대한 소득지원이 갖는 노동의욕 감퇴 유인효과가 적고 부양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자녀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유도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세액공제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나 아동부양의 필요경비를 보전하는 소득공제제도를 운영중
 - 그러나 일률적 소득공제제도는 소득수준에 따라 한계세율 체감효과가 다르고 저소득층에 대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음.
 - 특정비용에 대한 공제허용은 동 경제활동의 시장가격을 낮추어 수요패턴의 변화 등 경제적 왜곡을 초래할 수 있음.
 - 지출의 유연성 측면, 지원의 공평성 측면에서 세액공제가 우월할 수 있으며 일정수준의 소득지원을 위해서 환급가능한 형태로 많은 나라들이 운영

- 본 보고서는 외국의 자녀세액공제제도들의 운영행태를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자녀세액공제제도의 도입여부 논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조세제도 내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제도 중 자녀세액공제가 갖는 역할과 다른 지원제도와 연계성을 중심으로 살펴봄.

II. 외국의 자녀세액공제제도

- 외국의 자녀세액공제제도는 각국의 아동빈곤 정도, 조세제도 등에 따라 상이하
게 나타나고 있음.
 - 자녀세액공제제도는 다시 환급가능한 세액공제와 비환급성 세액공제로 나뉨.
 -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자녀부양 효과를 반영하여 환급가능한 세액공제제도
의 해외사례를 살펴봄.
 - 비환급성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유사하여 소득이 낮은 계층에의 지원효
과는 적기 때문임.

- 환급가능한 자녀세액공제제도의 경우에도 독립적인 세액공제로 존재하는 경우
와 다른 제도와 결합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미국과 같은 경우는 EITC제도와 결합된 자녀세액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캐나다, 호주 등은 개별적인 자녀세액공제제도를 운용
 - 근로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제도인 EITC와 결합된 자녀세액공제제도는 그
적용범위가 일반적 자녀세액공제제도보다 제한적
 - 영국은 일반적인 자녀세액공제제도와 함께 근로 저소득층 지원제도인 EITC
에서도 자녀에 따른 차등을 두고 있음.

1. 미 국

- 독립적인 자녀세액공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제도인
EITC와 연계되어 운용
 - EITC 최고급여(2004년)를 기준으로 할 때 첫 아동 1인에 대한 세액공제는
2,214달러 두 번째 아동의 경우 1,696달러임.

○ 세 번째 이상의 아동에 대한 추가적인 공제는 없음.

EITC와 연계된 제도운용으로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자녀세액공제의 혜택이 없음.

○ 2004년 기준 35,458달러(아동 2인 이상 부부합산 소득기준)가 지원의 상한 소득

가. EITC 수급 자격요건

모든 국민과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근로활동이 가능한 Social Security Number를 소유하여야 함.

○ 자녀 수에 따라 근로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이어야 하고 이자소득, 배당금, 임대료 등의 투자소득이 연간 \$2,650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인 경우 부부가 함께 소득신고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과 관련해서 가족관계, 자녀의 연령, 자녀의 거주여부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연령은 19세 미만이거나 24세 미만인 학생이고 장애아동은 연령에 무관

- 거주여부는 지난 1년 동안 6개월 이상 신청자와 거주해야 함.

- 자녀가 없는 경우는 연령이 25세 이상 65세 미만이면 해당되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한 사람만 만족하면 됨.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 및 투자소득 기준

○ 조정총소득(AGI)이 적격자녀가 1명인 경우 30,338달러(기혼자합산신고의 경우 31,338달러), 적격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4,458달러(기혼자합산신고의 경우 35,458달러)이하인 경우 적용

○ 투자소득이 2,650달러 이하일 경우 해당

EITC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가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기혼자합산신고

(Married Filing Jointly)의 경우, 최소한 한 명의 배우자는 근로소득이 있어야 함.

○ 근로소득은 임금 및 팁 중 과세되는 모든 소득을 말하며, 비과세소득은 포함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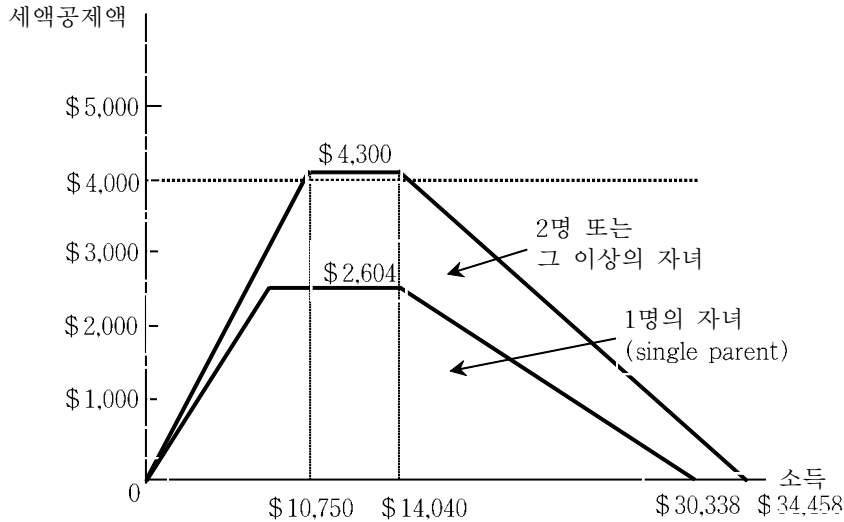
□ 2004년 EITC 수급규모를 살펴보면 자녀가 한 명인 경우 최대 수급규모는 2,604달러이며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4,300달러임.

○ 적용 대상소득은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소득이 34,458달러 이하이며 합산신고의 경우 35,458달러

〈표 1〉 EITC 신청을 위한 규칙

모든 수급자 대상		적격자녀가 있는 경우	적격자녀가 없는 경우
Rule 1. 조정총소득 (AGI) 기준	Rule 5. 신청서 2555이나 2555-EZ를 제출할 수 없음. (국외근로소득관련)	Rule 2. 적격자녀는 유효한 SSN을 가져야 함.	Rule 11. 과세연도 말에 최소한 25세 이상 65세 미만이어야 함.
Rule 2. 유효한 SSN이 있어야 함.	Rule 6. 투자소득 (Investment Income)이 과세연도 2004년동안 2,650달러 이하이어야 함.	Rule 8. 자녀가 관계, 나이, 주거 심사(test)를 충족해야 함.	Rule 12. 다른 사람의 부양자가 아니어야 함. 합산신고(Joint Return)의 경우 두 배우자 모두 해당됨.
Rule 3. 신고자격 (filing status)이 '기혼자개별신고(married filing separately)'가 아니어야 함.	Rule 7. 근로소득이 있어야 함.	Rule 9. 적격자녀에 대한 EITC 신청은 수급자 1인에게 적용되며 1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중복적용되지 않음.	Rule 13. 수급자가 다른 사람의 적격자녀가 아니어야 함.
Rule 4. 미국시민이거나 재류 외국인(Resident Alien)이어야 함.		Rule 10. 수급자가 다른 사람의 적격자녀가 아니어야 함.	Rule 14. 수급자가 미국에서 1년 중 6개월 이상 주거해야 함. 합산신고의 경우 두 배우자 모두 해당됨.

[그림 1] Federal Earned Income Tax Credit(2004년)



주: 개별신고의 경우

자료: Loberera, Joseph and Bob Zahradnik, "A Hand Up: How State Earned Income Tax Credits Help Working Families Escape Poverty in 2004,"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May 2004.

나. 제도의 운영

□ 구간별 세액공제금액이 다음과 같이 결정

- 점증구간에서는 근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액이 증가하며 근로소득에 급여증가율을 곱한 금액만큼 지급
- 평탄구간에서는 근로소득이 증가해도 급여액은 최대급여액으로 일정하고 점감구간에서는 근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액이 0달러가 될 때까지 근로소득에 급여감소율을 곱한 금액만큼 감소

□ 산출한 EITC 급여액이 세부담액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을 납세자에게 환급

- EITC 급여액이 세부담액보다 작을 경우, 세부담액에서 EITC 급여액을 차감한 것이 최종 결정세액

- 모든 소득기준점(Income Thresholds)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
- 2005년 EITC 신청건수는 21백만건으로 총 신청금액은 397억달러에 이르며 그 중 환급자 및 환급액은 각각 18.9백만건, 346억달러 수준

〈표 2〉 EITC 급여체계 및 급여산정방식 변천과정

(단위: \$, %)

연 도		점증비율	점증구간	최대급여액	점감비율	점감구간
1975~78		10.0	0~4,000	400	10.0	4,000~8,000
1979~84		10.0	0~5,000	500	12.5	6,000~10,000
1985~86		11.0	0~5,000	550	12.22	6,500~11,000
1987		14.0	0~6,080	851	10.0	6,920~15,432
1988		14.0	0~6,240	874	10.0	9,840~18,576
1989		14.0	0~6,500	910	10.0	10,240~19,340
1990		14.0	0~6,810	953	10.0	10,730~20,264
1991	자녀 1명	16.7	0~7,140	1,192	11.93	11,250~21,250
	자녀 2명 이상	17.3	0~7,140	1,235	12.36	11,250~21,250
1992	자녀 1명	17.6	0~7,520	1,324	12.57	11,840~22,370
	자녀 2명 이상	18.4	0~7,520	1,384	13.14	11,840~22,370
1993	자녀 1명	18.5	0~7,750	1,434	13.21	12,200~23,050
	자녀 2명 이상	19.5	0~7,750	1,511	13.93	12,200~23,050
1994	자녀 0명	7.65	0~4,000	306	7.65	5,000~9,000
	자녀 1명	26.30	0~7,750	2,038	15.98	11,000~23,755
	자녀 2명 이상	30.00	0~8,425	2,528	17.68	11,000~25,296
1995	자녀 0명	7.65	0~4,100	314	7.65	5,130~9,230
	자녀 1명	34.0	0~6,160	2,094	15.98	11,290~24,396
	자녀 2명 이상	36.0	0~8,640	3,110	20.22	11,290~26,673
1996	자녀 0명	7.65	0~4,220	323	7.65	5,280~9,500
	자녀 1명	34.0	0~6,330	2,152	15.98	11,610~25,078
	자녀 2명 이상	40.0	0~8,890	3,556	21.06	11,610~28,495
1997	자녀 0명	7.65	0~4,340	332	7.65	5,430~9,770
	자녀 1명	34.0	0~6,500	2,210	15.98	11,930~25,750
	자녀 2명 이상	40.0	0~9,140	3,656	21.06	11,930~29,290

〈표 2〉의 계속

연 도		점증비율	점증구간	최대급여액	점감비율	점감구간	
1998	자녀 0명	7.65	0~4,460	341	7.65	5,570~10,030	
	자녀 1명	34.0	0~6,680	2,271	15.98	12,260~26,473	
	자녀 2명 이상	40.0	0~9,390	3,756	21.06	12,260~30,095	
1999	자녀 0명	7.65	0~4,530	347	7.65	5,670~10,200	
	자녀 1명	34.0	0~6,800	2,312	15.98	12,460~26,928	
	자녀 2명 이상	40.0	0~9,540	3,816	21.06	12,460~30,580	
2000	자녀 0명	7.65	0~4,610	353	7.65	5,770~10,380	
	자녀 1명	34.0	0~6,920	2,353	15.98	12,690~27,413	
	자녀 2명 이상	40.0	0~9,720	3,888	21.06	12,640~31,152	
2001	자녀 0명	7.65	0~4,760	364	7.65	5,950~10,710	
	자녀 1명	34.0	0~7,140	2,428	15.98	13,090~28,281	
	자녀 2명 이상	40.0	0~10,020	4,008	21.06	13,090~32,121	
2002	Non	자녀 0명	7.65	0~4,910	376	15.98	6,150~11,060
	Joint	자녀 1명	34.0	0~7,370	2,506	21.06	13,520~29,201
	Filers	자녀 2명 이상	40.0	0~10,350	4,140	7.65	13,520~33,178
	Joint	자녀 0명	7.65	0~4,910	376	7.65	7,150~12,060
	Filers	자녀 1명	34.0	0~7,370	2,506	15.98	14,520~30,201
		자녀 2명 이상	40.0	0~10,350	4,140	21.06	14,520~34,178
2003	Non	자녀 0명	7.65	0~4,910	382	7.65	6,240~11,230
	Joint	자녀 1명	34.0	0~7,370	2,547	15.98	13,730~29,666
	Filers	자녀 2명 이상	40.0	0~10,350	4,204	21.06	13,730~33,692
	Joint	자녀 0명	7.65	0~4,990	382	7.65	7,240~12,230
	Filers	자녀 1명	34.0	0~7,490	2,647	15.98	14,730~30,666
		자녀 2명 이상	40.0	0~10,510	4,204	21.06	14,730~34,692
2004	Non	자녀 0명	7.65	0~5,100	390	7.65	6,390~11,490
	Joint	자녀 1명	34.0	0~7,660	2,604	15.98	14,040~30,338
	Filers	자녀 2명 이상	40.0	0~10,750	4,300	21.06	14,040~34,458
	Joint	자녀 0명	7.65	0~5,100	390	7.65	7,390~12,490
	Filers	자녀 1명	34.0	0~7,660	2,604	15.98	15,040~31,338
		자녀 2명 이상	40.0	0~10,750	4,300	21.06	15,040~35,458

〈표 3〉 EITC 수급자 수와 급여액(1975~2003년)

연도	수급자 수(천명)	총급여액 (백만달러)	환급된 급여액 (백만달러)	가구당 평균 급여액
1975	6,215	1,250	900	201
1976	6,473	1,295	890	200
1977	5,627	1,127	880	200
1978	5,192	1,048	801	202
1979	7,135	2,052	1,395	288
1980	6,954	1,986	1,370	286
1981	6,717	1,912	1,278	285
1982	6,395	1,775	1,222	278
1983	7,368	1,795	1,289	224
1984	6,376	1,638	1,162	257
1985	7,432	2,088	1,499	281
1986	7,156	2,009	1,479	281
1987	8,738	3,391	2,930	450
1988	11,148	5,896	4,257	529
1989	11,696	6,595	4,636	564
1990	12,542	7,542	5,266	601
1991	13,665	11,105	8,183	813
1992	14,097	13,028	9,959	924
1993	15,117	15,537	12,028	1,028
1994	19,017	21,105	16,598	1,110
1995	19,334	25,956	20,829	1,342
1996	19,464	28,825	23,157	1,481
1997	19,391	30,389	24,396	1,567
1998	20,273	32,340	27,175	1,595
1999	19,259	31,901	27,604	1,656
2000	19,277	32,296	27,803	1,675
2001	19,593	33,376	29,043	1,704
2002	19,795	35,784	31,769	1,808
2003	19,284	34,412	30,869	1,784

주: 2002~2003년 자료는 예측치임.

자료: 1975~2001년은 Internal Revenue, 2002~2003년은 Joint Committee on Taxation.

〈표 4〉 EITC제도의 어제와 오늘

구 분	1975년	2004년	비 고
최대 지급액	400달러	4,300달러	10.8배
적격 소득금액	8,000달러	35,458달러	4.4배
신청인원	6.2백만명	21백만명	3.4배
신청금액	12억 5천만달러	380억달러	30.4배

다.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EITC

- 주정부의 EITC는 대부분 연방 EITC 급여수준의 일정 비율로 계산하여 연방 EITC의 자격조건을 그대로 적용
 - 따라서 자녀세액공제 부문도 일정하게 증가

- 2004년 미국 17개 주와 Columbia자치구는 EITC제도를 주 소득세의 하나로 운영
 - 뉴욕주에서는 State-EITC가 연방 EITC공제액의 30% 수준
 - 그 중 13개 주는 연방 EITC제도와 마찬가지로 환급가능한 EITC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자격을 가진 아동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들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

〈표 5〉 주정부 EITC제도

	주(state)	연방 세액공제에 대한 비율
환급가능한 세액공제	콜로라도	10%
	콜롬비아	25%
	일리노이	5%
	인디애나	6%
	캔자스	15%
	메릴랜드	20%
	메사추세츠	15%
	미네소타	평균 33%(소득에 따라 변화)
	뉴저지	20%(소득이 20,000달러 미만일 경우)
	뉴욕	30%
	오클라호마	5%
	버몬트	32%
위스콘신	4%(자녀 1명)/14%(자녀 2명)/43%(자녀 3명)	
환급하지 않는 세액공제	아이오와	6.5%
	메인	4.92%
	오리건	5%
	로드 아일랜드	25%
	버지니아	20%(2006년에만 적용)

자료: Lobrera, Joseph and Bob Zahradnik, "A Hand Up: How State Earned Income Tax Credits Help Working Families Escape Poverty in 2004: Summary,"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June 9, 1999, Particularly Table 1.

2. 영국

- 영국의 자녀세액공제제도는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에도 자녀요인이 포함
 - 자녀세액공제와 근로세액공제는 최고액을 초기에 부여하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형태
 - 그 외 재정지출 형태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자녀수당(Child Benefit)도 존재
 - 자녀수당의 경우 2005~2006 회계기간 동안 첫째 자녀는 연 884파운드, 둘째 이후는 자녀당 연 593파운드 지급
-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가족요건과 자녀요건에 따라 결정되며 이러한 급여액의 최고액은 자녀 1인의 경우 2,175파운드, 2인 3,800파운드 수준(2004~2005 기준)

가.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CTC)

1) 적용대상

- 자녀세액공제제도는 직업의 유무에 상관없이 자녀를 가진 일정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정을 보조하기 위한 제도
 - 자녀수당(Child Benefit)과 근로세액공제(WTC)에 추가하여 지급
 - 자녀가 있으면 누구나 자녀세액공제(CTC)가 적용
- 자녀세액공제(CTC)를 적용받기 위한 자녀요건
 - 16세 미만의 아동 또는 16~18세 자녀를 가진 경우
 - 아동이 16~18세인 경우는 full-time 학생
 - 16, 17세로 full-time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이나 직업훈련소에 다니지 않으나, 경력서비스(Careers Service) 또는 연계서비스(Connexions Service)에

등록된 경우

- 자녀 자신에 대해 소득보조(Income Support)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또는 4개월을 초과한 기간의 구류형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 만약 자녀가 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자녀에 대한 주된 부양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가족이 신청

2) 급여체계 및 급여산정방식

- 자녀세액공제(CTC) 중 가족요소는 연간 545파운드이며 자녀요소는 1인당 1,690 파운드가 추가되어 결정
 - 장애아 혹은 만 1세 미만 자녀의 경우 각각 2,285파운드, 545파운드의 추가적인 공제액 지급
 - 장애아는 장애인생계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 DLA)을 받거나 자녀가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되었을 경우
 - 중증장애가 있는 경우는 920파운드 추가 지급
 - 중증장애요소는 자녀에 대해 DLA(최대 급여 요소(Highest Rate Care Component))를 받는 경우
- 다음의 표는 각 요소의 최대 급여액을 나타내며, 실제 급여액은 소득에 따라 결정됨.

〈표 6〉 각 구성요소에 따른 연간 급여액

구성요소	연간 급여액 (£)		
	2003~04	2004~05	2005~06
가족(Family)	545	545	545
가족, 영아(만 1세 미만) 추가	545	545	545
자녀(자녀 1인당)	1,445	1,625	1,690
장애(자녀 요소에 추가)	2,155	2,215	2,285
중증장애(자녀 및 장애 요소에 추가)	865	890	920

자료: Inland Revenue, *Child Tax Credit and Working Tax Credit: An Introduction*, 2004.
 Inland Revenue, *Child and Working Tax Credits Statistics*, 2004.

- 자녀세액공제(CTC)의 경우, 연간소득이 13,230파운드 이하일 경우 최대 급여액을 지급
 - 즉 소득보조(Income Support)나 소득연계형 구직수당(Income-based Jobseeker's Allowance)을 받는 경우는 자동적으로 최대 급여액 수령

- 소득이 동 기준점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액은 기준점을 초과하는 1파운드마다 37펜스씩 감소하나 50,000파운드 소득까지 가족요소 지원액 545파운드는 유지
 - 점감구간은 부양자녀가 1인인 경우는 13,230~17,135파운드이며, 부양자녀가 2인 경우는 13,230~21,040파운드
 - 점감구간 이후 50,000파운드 이하 소득구간에서는 급여액이 일정

- 연간 소득이 두 번째 기준점인 50,000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소득 15파운드마다 1파운드에 해당하는 가족요소를 감액
 - 만 1세 미만 혹은 장애자녀 등으로 인해 연간 소득이 50,000파운드를 초과함에도 급여액이 가족요소(Family Element)를 초과하나 이에도 동일한 감액률을 적용하므로 다른 가구보다 높은 소득구간에서도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누림.

〈표 7〉 CTC 급여액(2004~2005년)

(단위: £)

연간 총부부합산소득	자녀 수		
	1명	2명	3명
일하지 않는 경우	2,175	3,800	5,430
5,000	2,175	3,800	5,430
8,000	2,175	3,800	5,430
10,000	2,175	3,800	5,430
15,000	1,610	3,240	4,865
20,000	545	1,390	3,015
25,000	545	545	1,165
30,000	545	545	545
35,000	545	545	545
40,000	545	545	545
45,000	545	545	545
50,000	545	545	545
55,000	210	210	210
60,000	0	0	0

자료: Inland Revenue, *Child Tax Credit and Working Tax Credit: An Introduction*, 2004.

나.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 WTC)

- 근로세액공제는 노동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금액의 환급가능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로 부양자녀 양육비에 대한 공제로 제한적인 형태의 자녀세액공제
 - 적격 자녀양육비 지출액에 대해 70%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양육비 요인(Childcare Element)도 있음.

1) 적용대상

- 근로세액공제(WTC)제도는 자녀가 없는 가족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이나 자영업 소득과 같이 노동으로 인한 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가족에게 일정수준의 소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급되는 제도
 - 장애인이 있거나 적격 자녀양육비가 있는 경우에도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제도에 추가하여 지급
- 근로세액공제(WTC)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모두 적용받을 수 있으며, 수급요건은 연령, 근로시간 등이 있음.
 -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6세 이상이고 1주당 최소 16시간 이상 근로하여야 하며 자녀가 없는 경우는 25세 이상이고 1주당 30시간 이상 근로하여야 함.
 - 취업에 있어서 불리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 경우는 16세 이상이고 1주당 16시간 이상 근로하여야 함.
- 근로세액공제(WTC)의 적용단위는 가구단위이고 급여액을 결정하는 기준인 소득에 대한 정의 및 범위는 WTC와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CTC)가 동일
 - 기준소득은 수급자가 받은 세전 총소득(Gross Income)이고 WTC 및 CTC는 연간 세액공제
 - WTC와 CTC를 결정하는 소득은 소득세 신고시의 소득을 기준

- 단 국민보험료(National Insurance)는 제외하고 Share Incentive Plan (SIP)에 따라 고용주 회사의 주식을 수급자의 소득으로 매입하는 경우, 소득에서 제외된 매입액은 다시 소득에 포함.
- 승인된 연금 납부액¹⁾과 Gift Aid 또는 Payroll Giving Scheme은 포함하지 않음.

2) 급여체계 및 급여산정방식

- 과세연도 2003~2004년 기준으로 살펴볼 때, 부부 또는 편부모인 경우는 기본요소 1,525파운드와 부부 또는 편부모요소 1,500파운드를 합한 3,025파운드가 최대 급여액
 - 부양자녀가 없는 독신의 경우에는 1주당 30시간 이상 일을 해야 수급자격이 주어지므로 기본요소인 1,525파운드와 근로요소 620파운드가 추가된 금액이 최고급여
- 근로세액공제(WTC) 급여액의 자녀양육 요소(Childcare Element)는 등록 또는 승인된 자녀양육비에 대하여 추가 보조를 허용
 - 제도 변경 이전의 근로가족세액공제(WFTC)를 WTC로 통합한 것으로 최소한 1주당 16시간 이상 일을 해야 함.
 - 부부인 경우,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일할 능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두 사람 모두 각각 최소한 1주당 16시간 이상 근로해야 함.
 - 승인된 자녀양육에 지출한 비용 중 70%에 해당하는 급여액까지 자녀양육요소를 적용
 - 자녀양육지출 비용의 상한은 자녀 1인의 경우 1주당 135파운드,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1주당 200파운드
 - 2005~2006회계연도의 경우 각각 175파운드/주, 300파운드/주로 인상
 - 자녀양육요소는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근로세액공제(WTC) 급여액에 추가

1) Occupational Pension Scheme, Personal Pension Plan, Retirement Annuity

- 근로세액공제(WTC) 급여액은 수급자의 소득에 의해 결정
 - 연간 소득(또는 파트너와의 합산소득)이 5,060파운드 미만인 경우 아동세액 공제(CTC)를 지급받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요소의 최대 급여액 지급
 - 소득이 기준점(Threshold)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급여액은 기준점을 초과하는 1파운드마다 37펜스씩 감소
 - 기준소득 5,060파운드를 초과하면, 최대 급여액은 자녀양육요소(Child Care Element)를 제외한 근로세액공제(WTC), WTC의 자녀양육요소, 아동세액 공제(CTC)의 자녀요소, CTC의 가족요소(Family Element) 순서로 감소

〈표 8〉 근로세액공제(WTC) 각 구성요소에 따른 연간 급여액

구성요소		연간 급여액 (£)		
		2003~04	2004~05	2005~06
기본요소(독신 또는 부부 1인당)		1,525	1,570	1,620
편부모 및 부부요소		1,500	1,545	1,595
1주당 30시간 근로		620	640	660
장애(Disability) ²⁾		2,040	2,100	2,165
중증 장애(Severe Disability)		865	890	890
50세 이상 재취업 ³⁾	1주당 16~29시간 ⁴⁾⁵⁾	1,045	1,075	1,110
	1주당 30시간 이상	1,565	1,610	1,660
자녀양육비	1명의 자녀	1주당 135	1주당 135	1주당 175
	2명 이상의 자녀	1주당 200	1주당 200	1주당 300
자녀양육비보조 비율		70%	70%	70%

자료: Inland Revenue, *Child Tax Credit and Working Tax Credit: An Introduction*, 2004.
 Inland Revenue, *Child and Working Tax Credits Statistics*, 2004.

- 2) 근로의무조건 있음.
- 3) 취업후 1년간만 지급함.
- 4) 부부합산소득이고 부부가 모두 이들 중 하나의 요소에 해당하면, 부부당 두 개의 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요소에 대한 급여액을 두 배로 적용.
- 5) 50세 이상 재취업(return to work)요소(1주당 16~29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에 대한 책임이 없거나 WTC의 장애 요소를 충족하지 못하면, 부부의 요소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받지 못함.

〈표 9〉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WTC 급여액(2003~2004년)

(단위: £)

연간 총 부부합산소득	1주당 16~30시간 일하는 부모 또는 편부모		1주당 30시간 이상 일하는 부모 또는 편부모	
	연간	1주당	연간	1주당
5,000	3,025	57.80	3,645	69.70
7,500	2,120	40.60	2,745	52.50
10,000	1,195	22.90	1,820	34.80
12,500	270	5.20	895	17.10
15,000	0	0.00	0	0.00

자료: Inland Revenue, Child Tax Credit and Working Tax Credit: An Introduction, 2004.

〈표 10〉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WTC 급여액(2003~2004년)

(단위: £)

연간 총 부부합산소득	25세 이상이며 1주당 30시간 이상 일하는 독신		25세 이상이며 1주당 30시간 이상 일하는 부부	
	연간	1주당	연간	1주당
5,000	2,145	41.00	3,645	69.70
7,500	1,245	23.80	2,745	52.50
10,000	320	6.10	1,820	34.80
12,500	0	0.00	895	17.10
15,000	0	0.00	0	0.00

자료: Inland Revenue, Child Tax Credit and Working Tax Credit: An Introduction, 2004.

3. 캐나다

□ 캐나다 연방정부의 자녀세액공제제도는 CCTB(Canada Child Tax Benefit)와 NCBS(National Child Benefit Initiative)제도로 구분됨.

○ CCTB는 중산층 이하의 아동을 가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서, 아동을 가진 전체 가구의 약 80%가 CCTB base benefit을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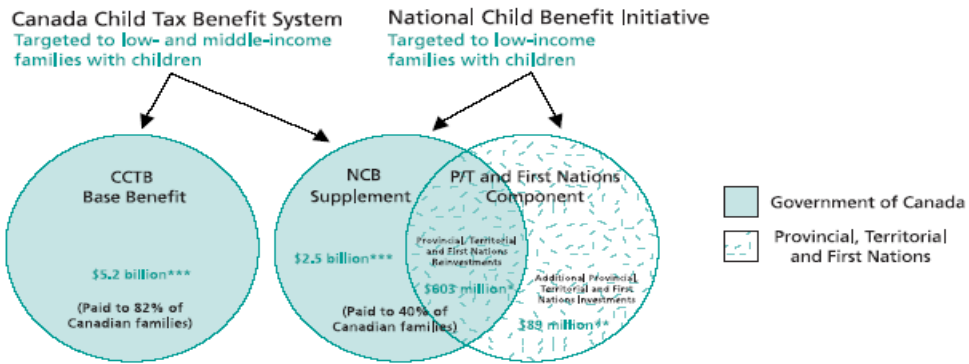
○ NCBS는 저소득층의 아동을 가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서, 아동을 가

진 가구의 약 40%가 NCBS 급여를 수급

- NCBS 급여는 CCTB base benefit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지급되나 사회부조 (Social assistance) 수급자의 경우 NCBS 급여만큼 사회부조 급여가 삭감

-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아동을 가진 저소득가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급여, 근로소득보충제도, 그리고 사회적 서비스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 제공
- CCTB와 NCBS를 합하여 CCTB 또는 NCB(National Child Benefit)로 통칭하기도 함.

[그림 2] 캐나다 National Child Benefit Initiative의 구조



자료: The National Child Benefit Progress Report: 2002.(2003). p. 4.

- 지원대상이 넓은 CCTB는 소득보조제도를 가족복지제도라기보다는 임금대체제도로 간주하도록 하여 수급자로 하여금 노동시장에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함.
 - 이에 따라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를 동등하게 취급하며 이를 통해 근로의욕을 촉진하고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반면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으로 한정된 NCBS는 아동빈곤 예방에 중점을 두며 복지수급 탈피시 나타나는 급여감소를 완화하기 위한 것임.

- 동시에 연방과 지방정부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들의 중복을 감소시켜 보다 단순하고 효율적인 제도 구축

가. 적용대상

- 적용대상은 소득원에 관계없이 다음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일정 기준 이하의 모든 소득자가 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 있는 가구
 - 아동의 보호와 양육의 주된 책임을 가진 사람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캐나다 시민,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 이민법이나 난민법에 의해 보호받는 자(protected person), 18개월 이상 캐나다에 거주한 임시거주자(temporary resident)
- CCTB와 NCBS의 적용단위는 가구단위
- 급여결정의 기준 소득은 모든 종류의 소득을 포함한 가족순소득(family net income)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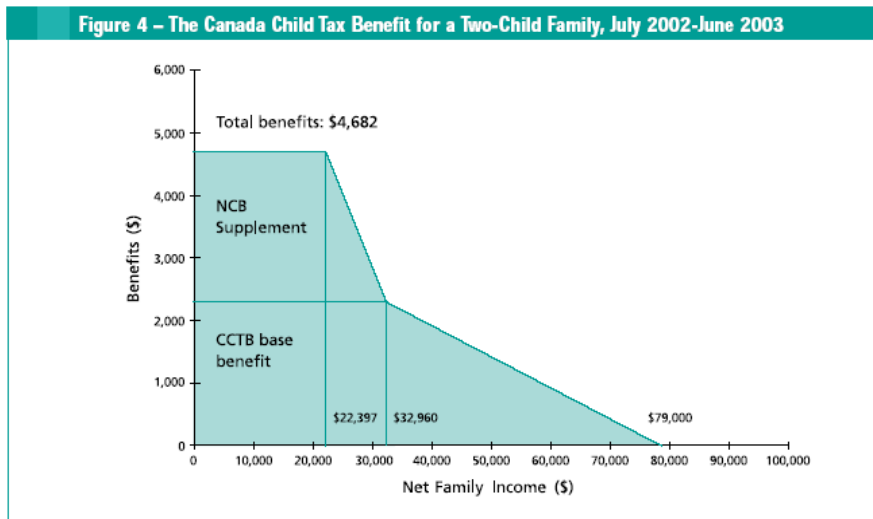
나. 급여체계 및 운영방식

- 급여체계는 소득에 따라 급여 변화가 없는 평탄구간과 급여감소가 일어나는 점감구간으로 구성
 - 2004~2005년 기준 평탄구간에서의 CCTB 기본급여액(base benefit)은 모든 아동 1인당 월 \$100.66이며 셋째 아동 이상인 경우 해당 아동 1인당 \$7.00이 추가
 - 또한 7세 미만 아동인 경우 \$19.91이 추가
 - NCBS 급여액은 첫째 아동 월 \$125.91, 둘째 아동 월 \$107.91, 그리고 셋째 아동부터는 월 \$101.25임.

- 소득증가에 따라 급여가 감소하는 점감구간은 CCTB의 경우 가구소득이 \$35,000 이상인 경우에 시작
 - 한계세율은 아동 1명인 경우 2%이고 아동 2명 이상인 경우 4%

- NCBS의 점감구간은 가구소득이 \$22,615 이상인 경우에 시작
 - 한계세율은 아동이 1명인 경우 12.2%, 아동 2명인 경우 22.7%, 그리고 아동 3명 이상인 경우 32.5%

[그림 3] CCTB와 NCBS 급여체계(2002~2003년)



Note: Benefits do not include an additional benefit provided for each child less than seven years of age for whom no child care expenses were claimed. In 1996-1997, this benefit was equivalent to \$213 per child, and is scheduled to increase to \$232 per child as of 2003-2004.

<표 11> CCTB 급여(2002~2003년)

(단위: 캐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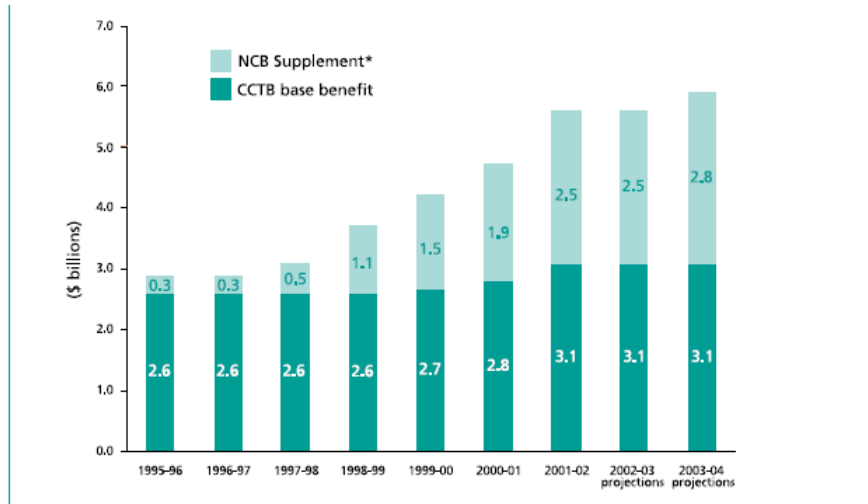
자녀의 수	기초 급여	NCB 보조금	연간 합계	매월 급여
첫째 자녀	1,151	1,293	2,444	203.66
둘째 자녀	1,151	1,087	2,238	186.50
셋째 이상 자녀	1,231	1,009	2,240	186.66

- 2002~2003년 기준 최대급여 적용대상 소득은 22,390달러 이하인 가구로 CCTB와 NCBS의 최대급여를 수급
 - 4자녀를 둔 가구인 경우 첫째 아이는 기초 CCTB와 NCB 보조금을 합해서 매월 203.66달러(연간 2,444달러)를 지급받게 되고 둘째 아이는 186.50달러(연간 2,238달러), 셋째 아이는 월 186.66(연간 2,240달러)달러, 넷째 아이 역시 186.66(연간 2,240달러)달러를 받게 되어 합계 매월 763달러(연간 9,162달러)를 받게 됨.

다. 전달체계·급여지급 방식

- CCTB와 NCBS는 캐나다 관세국세청(Canada Customs and Revenue Agency: CCRA)에 의해 운영
 - 급여신청은 수급 예정자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아동급여를 모두 일괄적으로 CCRA에 신청
 - 아동급여수급을 위해 개별 수급자는 적격 아동에 대한 특정 양식(T2201)을 기입하여 CCRA에 신청해야 함.
 - 급여지급은 CCRA는 수급자가 CCTB를 신청한 후, 매월 20일에 지급하나 매월 급여액이 10달러 미만인 경우 1년 동안의 급여액을 합산하여 수급이 시작된 첫 번째 달에 지급
 - CCTB 급여는 수급자의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직접 입금
- 2001~2002년도의 경우 수급규모는 CCTB 수급가구가 320만가구(아동 580만명)로 아동을 가진 가구의 82%를 포함하였으며, NCBS 수급가구는 270만가구(아동 270만명)로 아동을 가진 가구의 40%를 포함
 - 총지급액은 CCTB \$5.2billion 그리고 NCBS \$2.5billion
- 1995~1996년부터 2003~2004년까지의 지출규모는 CCTB의 경우 \$2.6billion에서 \$3.1billion로, NCBS는 \$0.3billion으로부터 \$2.8billion으로 증가

[그림 4] 1995~96년부터 2003~2004년까지의 NCBS 수급가구에 대한 연방정부 지출



* Includes the former Working Income Supplement for the years 1995-1996 to 1997-1998.
 Source: CCTB administrative data from the Canada Customs and Revenue Agency.

4. 호주

□ 호주의 경우 조세제도를 통한 자녀세액공제의 제공은 주로 Family Tax Benefit 제도를 통해 이루어짐.

○ 가족보조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부양해야 하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용을 지급하는 제도

○ Part A와 Part B로 나누어지며 Part A와 Part B는 중복 적용가능

□ FTB Part A는 자녀양육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

○ 21세 미만의 부양자녀마다 지급하며, 21세 이상 25세 미만의 경우 full-time 학생이어야 하며 다른 소득보조급여액을 받지 않아야 함.

○ 동일조건하에서 부양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자녀 수가 많을수록 높은 급여액을 지급

- 아동 수에 따라 급여지급의 기준소득이 변화

- FTB Part B는 추가적인 지원을 위한 것으로 한 명의 자녀에 대해서만 적용
 - 자녀 있는 편부모가정에도 적용
 - 가장 어린 부양자녀가 16세가 될 때까지 지급하며, 가장 어린 부양자녀가 18세에 해당하는 경우 full-time 학생이고 학생수당(Youth Allowance)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당을 받지 않아야 함.
 - 급여액은 자녀 수에 따라 변하지 않지만, 5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족에게는 더 높은 급여액을 지급
 - 부부인 경우, FTB Part B는 2차 소득자(Secondary Earner)에 대한 소득심사(income test)를 통해 지급여부를 결정
 - 주된 소득자(Primary Earner)에 대해서는 소득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편부모의 경우 지급액은 동일

- FTB는 가구(family)단위로 적용되며 한 가구의 모든 자녀에 대한 FTB 지급은 부부 중 한 명만이 신청가능

- FTB 지급조건은 다음과 같음.
 - 부양자녀 양육조건
 - 호주거주자이거나 FTB 목적에 적합한 특정비자를 소지한 자
 - 1999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의 전체 기간 중 호주 밖에서 거주한 적이 없어야 함.
 - 현재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부양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하는 경우라면 최소한 평가기간⁶⁾의 10%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부양자녀를 양육하여야 함.

- 부양자녀(Dependent Child)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6) 평가기간(assessment period)은 공동양육비중을 계산하는 데 사용한다. 시작시점은 ① 부양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하기 시작한 날, ② 부양자녀를 양육하기로 한 일정이 변경된 날, ③ FTB 신고와 관련한 소득연도(income year)의 7월 1일 중 가장 늦은 때임. 종료시점은 ① 기산점이 속한 소득연도(income year)의 6월 30일, ② 부양자녀를 양육하기로 한 일정이 변경된 날 중 가장 빠른 때임. 부양자녀를 양육하기로 한 일정이 단기의 부재(absence) 또는 경미한 변동사항으로 변경된 것은 평가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20세 이하이거나 full-time 학생인 21세부터 24세에 이르는 자녀
- 수급자가 자녀를 돌보고, 복지 및 계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자녀가 FTB 규정에 적합한 호주거주자이거나 부양의무자와 함께 살아야 함.
- 수급자의 배우자가 아니어야 함.
- 1999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의 전체 기간 중 호주 밖에서 거주한 적이 없어야 함.
- 자녀의 조정후 과세소득(Adjusted Taxable Income, ATI)이 기준금액 미만
- 자녀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소득보조금(Income Support)을 받고 있거나 16세 이상이고 교육제도⁷⁾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

〈표 12〉 부양자녀의 자격조건

자녀나이		ATI
~ 5세 미만		한도없음
5~15세	full-time 학생인 경우	한도없음
	full-time 학생이 아닌 경우	8,614달러(7백만원) 미만
16~24세 이하		8,614달러(7백만원) 미만

가. FTB 급여액

- FTB를 결정하는 기준은 가족 조정후 과세소득(Family Adjusted Taxable Income, 이하 '가족 ATI'라 함)임.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조정후 과세소득(ATI)을 합산
 - 가족 조정후 과세소득은 수급자 ATI와 배우자 ATI를 합한 금액

7) 교육제도(Prescribed Educational Scheme)는 ABSTUDY학교제도(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Study Assistance Scheme), 학생재정보조제도(Student Financial Supplement Scheme), 보훈자녀교육제도(Veterans' Children Education Scheme), 학위후과정장학금제도(Post-graduate Awards Scheme)를 말함.

1) FTB Part A

Part A의 수혜기준 소득은 18세 미만 자녀 수와 18~24세 미만 자녀 수에 따라 결정

○ 예를 들어 1명의 18세 미만 자녀만 있는 경우는 가족 ATI 한도는 85,702달러

○ 3명의 18세 이상 25세 미만 자녀들이 있는 경우는 가족 ATI 한도가 103,332달러

〈표 13〉 Part A 가족 조정후 과세소득(가족 ATI) 한도(2004년)

(단위: \$)

		18세 미만 부양자녀의 수							
		0	1	2	3	4	5	6	
18세 이상 25세 미만 부양자녀의 수	0	부적격	85,702	92,637	99,572	107,286	115,000	122,713	
	1	86,956	93,891	100,826	108,539	116,253	123,967	131,680	
	2	95,144	102,079	109,792	117,506	125,220	132,933	140,647	
	3	103,332	111,046	118,759	126,473	134,187	141,900	149,614	
	4	112,299	120,012	127,726	135,440	143,153	150,867	158,581	
	5	121,266	128,979	136,693	144,407	152,120	159,834	167,548	
	6	130,232	137,946	145,660	153,373	161,087	168,801	176,514	

급여액의 결정은 저소득 기준점과 고소득 기준점으로 소득구간을 나누고 최대급여액에서 시작하여 소득증가에 따라 감소

○ 고소득 기준점까지는 기본급여액 이상을 수급

〈표 14〉 Part A의 급여액(2004년)

자녀 나이	최대 급여액 (Maximum Rate)	기본 급여액 (Base Rate)
13세 미만	3,401.80달러	1,095.00달러
13~15세	4,314.30달러	1,095.00달러
16~17세	1,095.00달러	1,095.00달러
18~25세 미만	1,470.95달러	1,470.95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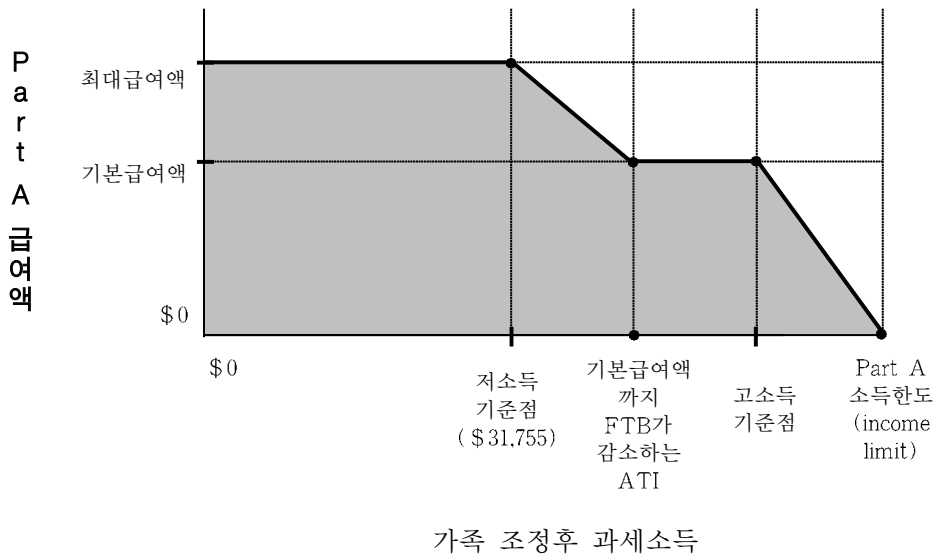
- 저소득 기준점은 31,755달러이며 고소득 기준점은 부양자녀의 수에 따라 결정
 - 고소득 기준점은 부양자녀 한 명의 경우 82,052달러로 시작하여 한 명이 추가 될 때마다 3,285달러씩 증가

〈표 15〉 Part A의 수급기준(2004년)

자녀 수	저소득 기준점 (Lower Income Threshold)	고소득 기준점 (Higher Income Threshold)
1	31,755달러(2,675만원)	82,052달러(6,912만원)
2	31,755달러(2,675만원)	85,337달러(7,189만원)
3	31,755달러(2,675만원)	88,622달러(7,466만원)
4	31,755달러(2,675만원)	91,907달러(7,743만원)

- 가족 ATI가 저소득기준점 이상일 경우 초과하는 소득 1달러당 30센트씩 최대급
여액에서 감액
 - 기본급여액(Base Rate)까지 감액되면 고소득 기준점까지 유지

[그림 5] 가족 ATI에 따른 Part A 급여액



2) FTB Part B

- Part B는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지급대상 결정
 - 급여 대상은 가장 나이가 어린 부양자녀가 16세 미만, 또는 full-time 학생일 경우 18세까지 급여대상

- Part B의 대상 소득기준은 더 낮은 소득이 있는 배우자 기준으로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에 따라 8,614~11,559달러 수준
 - 편부모의 경우는 소득과 상관없이 Part B의 최대 급여액을 받게 됨.

〈표 16〉 자녀 나이별 수급대상 소득금액

자녀 나이	ATI
가장 어린 자녀가 5세 미만인 경우	11,559달러
가장 어린 자녀가 16세 미만인 경우 또는 full-time 학생인 16세 이상 18세 이하 자녀인 경우	8,614달러

- Part B의 FTB 최대 급여액은 자녀나이에 따라 2,036.7~2,920달러 수준
 - 최대급여액 수급조건은 부부인 경우 더 낮은 소득자의 조정후 과세소득(ATI)이 1,824달러 이하여야 함.
 - 조정후 과세소득(ATI)이 1,824달러를 초과할 경우 추가소득 1달러당 급여액은 30센트씩 감소

〈표 17〉 Part B의 최대 급여액(2004년)

자녀 나이	연간 Part B 최대 급여액
5세 미만	2,920.00달러
5세 이상 18세 이하	2,036.70달러

나. 급여지급 방식

- FTB 신청은 FAO(Family Assistance Office)와 Tax Office 중 선택가능
 - FAO에 신청하는 경우 2주마다 지급받거나 과거 기간 해당액을 일시불로 직접 지급받을 수 있음.
 - Tax Office에 신청할 경우 일시불로 연도말에 받을 수 있음.

- 조세제도를 통해 신청할 경우는 가족상황에 따라 FTB Tax Claim 또는 FTB Short Tax Claim의 별도신고서를 작성해야 함.
 - FTB Tax Claim은 소득세신고(Tax Return)와 함께 하거나 소득세신고를 하고 '소득세평가고지서(Income Tax Notice of Assessment)'를 받은 후에 신청

5. 뉴질랜드

- 가족보조(Family Assistance)제도를 통해 18세 이하이며, 재정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재정적인 도움 제공
 - 가족보조는 자녀가 18세가 되는 연도말(달력에 따라 12월 31일)과 자녀가 재정적으로 독립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까지만 지급

- 가족보조(Family Assistance)는 가족수당(Family Support), 가족세액공제(Family Tax Credit),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부모세액공제(Parental Tax Credit) 등 네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수급자는 가족보조의 네 가지 방식을 중복 수급 가능
 - 자녀세액공제(CTC)는 2006년 4월부터 매주 일정시간 이상 근로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제도, In-work payment로 대체됨.

- 소득증가에 따른 급여경감은 가족수당, 자녀세액공제, 부모세액공제를 모두 합

하여 결정

- 가족수당, 자녀세액공제, 그리고 부모세액공제의 순서로 급여경감
- 가족세액공제는 다른 경감체계(Abatement Regime)가 적용되며, 가족수당, 자녀세액공제, 부모세액공제를 경감하기 전에 먼저 적용

□ 가족보조의 적용단위는 가구(family)단위이며 적용요건으로 일을 통한 소득획득이 요구됨.

- 동시에 뉴질랜드 거주자로서 최소한 12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 현재 뉴질랜드에 있는 자녀를 양육
 - 자녀는 정규직으로 근무하지 않으며, 일주일에 30시간 미만의 근무는 가능
 - 학생수당(Student Allowance)이나 다른 정부지원을 받지 않음.
 - 17세 이하이거나 18세인 경우 2학년이나 3학년 학생이어야 함.

□ 급여액 결정의 기준은 가족소득(Family Income)⁸⁾은 수급자의 총소득과 파트너의 총소득을 합한 것

- 파트너란, 남편, 아내, 또는 과세연도(Tax Year)⁹⁾ 동안 한 때라도 함께 거주한 사실상(de facto)의 배우자
- 가족소득은 일(work)을 통해 얻은 소득과 정부보조, 임대, 이자 등과 같은 다른 소득을 포함.

8) Family Assistance급여액에 적용되는 소득의 정의는 과세소득과 사회보장급여액에 적용되는 소득의 정의가 복합된 것임.

9) 과세연도(tax year)는 4월 1일부터 이후연도의 3월 31일까지를 말함.

〈표 18〉 연간세전 총소득에 포함되는 항목

연간 세전 근로소득(salary 또는 wages)
(+) 자영업소득, 사업소득, 파트너십소득, 국외소득, 등
(+) 자녀수당(Child Support)
(+) 이자, 배당, 임대, 로열티, 부동산, 트러스트 소득
(+) 급여(benefit), 국민연금(super), 보훈연금(Veteran's), 학생수당(Student Allowance)의 세전 수당
(+) 사고보상(accident compensation)의 세전 보상액
(-) 전파트너(ex-partner)에 대한 자녀수당(Child Support)지급액
수급자 또는 파트너의 총소득(total income)

〈표 19〉 가족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

잔업(Overtime)	보너스(Bonuses)
정부근로보조(Government Work Schemes)	원천징수지급액(Withholding Payments)
출산휴직수당(Paid Parental Leave Payments)	실업급여(Redundancies)
특정국민연금사용자기부금 (Employer Contributions to Certain Superannuation Scheme)	과세수당(Taxable Allowances)

〈표 20〉 소득과 자녀 수에 따른 가족수당, 자녀세액공제, 부모세액공제
(2004년 4월 1일~2005년 3월 31일)

(단위: \$)

주당 세전 가족소득	연간 세전 가족소득	2주마다 지급																	
		자녀 수																	
		1			2			3			4			5			6		
		FS	CTC	PTC	FS	CTC	PTC	FS	CTC	PTC	FS	CTC	PTC	FS	CTC	PTC	FS	CTC	PTC
182	9,500	94	30	300	158	60	300	222	90	300	286	120	300	350	150	300	414	180	300
183 to 221	9,501 to 11,500	94	30	300	158	60	300	222	90	300	286	120	300	350	150	300	414	180	300
222 to 259	11,501 to 13,500	94	30	300	158	60	300	222	90	300	286	120	300	350	150	300	414	180	300
260 to 298	13,501 to 15,500	94	30	300	158	60	300	222	90	300	286	120	300	350	150	300	414	180	300
299 to 336	15,501 to 17,500	94	30	300	158	60	300	222	90	300	286	120	300	350	150	300	414	180	300
337 to 384	17,501 to 20,000	94	30	300	158	60	300	222	90	300	286	120	300	350	150	300	414	180	300
385 to 413	20,001 to 21,500	86	30	300	150	60	300	214	90	300	278	120	300	342	150	300	406	180	300
414 to 451	21,501 to 23,500	72	30	300	136	60	300	200	90	300	264	120	300	328	150	300	392	180	300
452 to 490	23,501 to 25,500	58	30	300	122	60	300	186	90	300	250	120	300	314	150	300	378	180	300
491 to 519	25,501 to 27,000	48	30	300	112	60	300	176	90	300	240	120	300	304	150	300	368	180	300
520 to 548	27,001 to 28,500	32	30	300	96	60	300	160	90	300	224	120	300	288	150	300	352	180	300
549 to 576	28,501 to 30,000	15	30	300	79	60	300	143	90	300	207	120	300	271	150	300	335	180	300
577 to 605	30,001 to 31,500		28	300	62	60	300	126	90	300	190	120	300	254	150	300	318	180	300
606 to 634	31,501 to 33,000		11	300	45	60	300	109	90	300	173	120	300	237	150	300	301	180	300
635 to 663	33,001 to 34,500			293	27	60	300	91	90	300	155	120	300	219	150	300	283	180	300
664 to 692	34,501 to 36,000			276	10	60	300	74	90	300	138	120	300	202	150	300	266	180	300
693 to 721	36,001 to 37,500			259		53	300	57	90	300	121	120	300	185	150	300	249	180	300
722 to 750	37,501 to 39,000			241		35	300	39	90	300	103	120	300	167	150	300	231	180	300
751 to 778	39,001 to 40,500			224		18	300	22	90	300	86	120	300	150	150	300	214	180	300
779 to 807	40,501 to 42,000			207		1	300	5	90	300	69	120	300	133	150	300	197	180	300
808 to 836	42,001 to 43,500			189			283		77	300	51	120	300	115	150	300	179	180	300
837 to 865	43,501 to 45,000			172			266		60	300	34	120	300	98	150	300	162	180	300
866 to 894	45,501 to 46,500			155			249		43	300	17	120	300	81	150	300	145	180	300
895 to 923	46,501 to 48,000			137			231		25	300		119	300	63	150	300	127	180	300
924 to 951	48,001 to 49,500			120			214		8	300		102	300	46	150	300	110	180	300
952 to 980	49,501 to 51,000			103			197			291		85	300	29	150	300	93	180	300
981 to 1,009	51,001 to 52,500			86			180			274		68	300	12	150	300	76	180	300
1,010 to 1,038	52,501 to 54,000			68			162			256		50	300		144	300	58	180	300
1,039 to 1,067	54,001 to 55,500			51			145			239		33	300		127	300	41	180	300
1,068 to 1,096	55,501 to 57,000			34			128			222		16	300		110	300	24	180	300
1,097 to 1,125	57,001 to 58,500			16			110			204			298		92	300	6	180	300
1,126 to 1,153	58,501 to 60,000						93			187			281		75	300		169	300
1,154 to 1,182	60,001 to 61,500						76			170			264		58	300		152	300
1,183 to 1,211	61,501 to 63,000						58			152			246		40	300		134	300
1,212 to 1,240	63,001 to 64,500						41			135			229		23	300		117	300
1,241 to 1,269	64,501 to 66,000						24			118			212		6	300		100	300

주: FS: Family Support, CTC: Child Tax Credit, PTC: Parental Tax Credit
자료: Inland Revenue (NZ)

가. 가족수당(Family Support)

- 가족수당(Family Support)¹⁰⁾은 자녀양육비를 보조할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저소득 및 중산층 가족에게 현금으로 지급
 - 가족보조(Family Assistance)제도의 핵심 프로그램
 - 가족수당(Family Support)은 자녀 수와 가족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자녀 수에 따라 가족수당을 받기 위한 가족소득 기준은 2004~2005회계연도의 경우 자녀 1인은 31,352달러임.

〈표 21〉 가족수당(Family Support) 수급기준

자녀 수	연간 세전 가족소득
1	31,352달러 미만
2	36,899달러 미만
3	42,446달러 미만
4	47,992달러 미만
5	53,539달러 미만
6	59,086달러 미만

나. 가족세액공제(Family Tax Credit)

- 가족세액공제(Family Tax Credit)는 자영업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가족의 세전소득이 연간 최소한 18,368달러(1주당 세후 286달러)에 이르도록 지급
 - 적정 시간을 일하고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 일정 수준의 소득이 유지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
 - 동 제도는 2006년 4월 1일부터 소득(net income)이 연간 최소한 약 17,000달러(1,292만원)에 이르도록 인상 조정될 예정

10) 가족수당(Family Support)은 자녀수당(Child Support)과 다르다. 자녀수당은 자녀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부모가 국세청(Inland Revenue)을 통해 자녀를 보호(custody)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임.

- 가족수당(Family Support) 수급 요건을 충족
- 부모 중 최소한 한 사람이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연간 세전 가족소득 18,368달러 미만
 - 편부모가정인 경우 최소한 1주당 20시간 이상, 양부모가 모두 있으면 합쳐서 최소한 1주당 30시간 이상 근로
- 일년 중 일한 시간에만 기초하여 적용하며, 통상적인 업무수행중에 상해를 입거나 사고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도 가족세액공제 적용

다.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는 다른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및 중산층 가족에게 지급하는 세액공제제도
 - 지원대상은 가족소득이 저소득급여(Income-Tested Benefit)대상, 뉴질랜드 국민연금(Superannuation) 또는 보훈연금(Veteran's Pension), 학생수당(Student Allowance), ACC(사고보상기관), 私보험, 고용인에게서 받는 사고보상금(3개월 초과 수령시) 수령대상 등에 포함되지 않아야 함.
 - 동 제도는 2006년 4월 1일부터 일정시간 이상 근로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제도인 In-work payment로 대체됨.
-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는 자녀 수와 가족소득에 따라 결정
 - 자녀 수에 따른 기준 가족소득을 초과하더라도 13, 14, 15세인 자녀가 2명 이상, 또는 16, 17, 18세인 자녀가 1명, 또는 7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

〈표 22〉 자녀세액공제 수급기준 가족소득

자녀수	연간 세전 가족소득
1	33,952달러 미만
2	42,099달러 미만
3	50,246달러 미만
4	58,392달러 미만
5	66,539달러 미만
6	74,686달러 미만

라. 부모세액공제(Parental Tax Credit)

- 부모세액공제(Parental Tax Credit)는 뉴질랜드 국민연금(NZ Superannuation), 보훈연금(Veteran's Pension), 학생수당(Student Allowance) 또는 ACC 등 다른 정부지원 및 출산휴직수당(Paid Parental Leave payments)을 받지 않은 가족이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 출생 후 최초 56일 동안, 즉 8주 동안 지급
 - 수급조건은 8주 동안 가족소득이 저소득급여(Income-Tested Benefit), 뉴질랜드 국민연금(Superannuation) 또는 보훈연금(Veteran's Pension), 학생수당(Student Allowance), ACC, 私보험, 고용인에게서 받는 사고보상금(3개월 초과 수령시)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것

- 부모세액공제(Parental Tax Credit)는 자녀 수와 가족소득에 따라 결정
 - 생후 첫 8주간 주된 자녀양육자로서 자녀를 돌본 날짜 수도 고려

〈표 23〉 부모세액공제액 수급기준 가족소득

자녀 수	연간 세전 가족소득
1	60,024달러 미만
2	68,170달러 미만
3	76,317달러 미만
4	84,464달러 미만
5	92,610달러 미만
6	100,757달러 미만

- 부모세액공제는 신생아당 1,200달러(91만원)까지 지불
 - 출생 후 첫 8주 내에 자녀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주된 자녀양육자에게 전액의 부모세액공제액을 지불
 - 단, 동일한 신생아에 대하여 출산휴직수당과 부모세액공제를 중복적용치 않음.

마. 제도운영 방식

- 가족수당(Family Support)은 국세청(Inland Revenue)에서 지급
 - 저소득급여(Income-tested Benefit)를 받는 경우는 근로·소득부(Work and Income)에서 지급
 - 신청기관은 가족보조(Family Assistance)의 경우 국세청(Inland Revenue)에 신청
- 신청은 가족보조신청서(Family Assistance Registration)를 제출함으로써 성립
 - 가족보조신청서는 개인소득세신고서상의 신청표시를 통해 발급
 - 급여액은 가족보조신청서의 정보를 이용하여 결정
 - 고용주의 급여정보를 고려하여 국세청이 소득 및 자녀 수 등 정보제공
- 가족보조(Family Assistance) 지급주기는 2주마다 혹은 일시불 중 선택

- 부모세액공제(Parental Tax Credit)의 경우 2주일에 한번(최대 4회 지급) 지급받는 경우는 자녀 출생 후 3개월 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출생 후 3개월이 지나서 신청하면 일시불만 가능
 - 일시불은 1999년 10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인 경우만 해당
- 2주마다 지급받는 경우, 연간 실제 소득과 추정 소득의 차이가 있을 경우 연도 말에 지급받은 급여액을 반환

6. 독일

- 독일은 자녀와 관련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보육비 공제를 조세제도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정지원 형식의 가족수당 등도 운영

가. 자녀세액공제

- 소득공제로 한 명 이상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편부모는 2004년을 기준으로 가구당 1,308유로의 소득공제를 허용
- 아동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 2002년 이후부터 첫째부터 셋째 자녀까지는 자녀 1인당 1,848유로를, 넷째 이후의 자녀에 대하여는 2,148유로를 부모의 세액에서 공제
 - 부부합산신고를 하는 경우에 공제금액은 두 배
- 자녀보육비공제(Child-care benefits)
 - 부모들은 자신들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1,548유로를 초과하는 14세 이하의 아동의 양육비는 부모의 과세대상소득에서 공제 가능
 - 부부합산신고의 경우에 2004년 기준 한도액은 1,500유로

나. 가족수당(Family benefits)

- 가족수당(Kindergeld)은 월 단위 환급세액의 형식으로 지급
 - 가족세액공제와 자녀양육급여가 있음.

- 가족세액공제(Family tax credit(Kindergeld))
 - 가족세액공제는 18세 이하의 모든 아동에 대하여 지급
 - 자녀가 27세에 달할 때까지 교육을 받고 있거나, 21세에 달할 때까지 직장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가족세액공제의 지급기간이 연장
 - 19세 이상의 자녀의 소득이 연간 7,188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족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음.
 - 자녀의 수에 의하여 결정되는 가족세액공제(환급가능)의 지급액은 소득금액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월단위로 지급
 - 2002년 기준 첫째에서부터 셋째 자녀까지는 154유로/월, 넷째 및 그 이후의 자녀에 대해서는 179유로/월
 - 가족세액공제는 주로 지방가족사무소(local family office)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자에게 지급

- 자녀양육급여(Child-raising allowance)
 - 부모 중 새로 태어난 자녀를 양육하는 자는 자녀양육급여 지급받음.
 - 자녀양육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주당 30시간 이상 근로하여야 함.
 - 2004년을 기준으로 자녀가 24개월이 되는 달까지 매월 300유로/월의 자녀양육수당을 지급받는 방식과 자녀의 첫 번째 생일날까지 매월 450유로를 지급받는 방법 중 선택
 - 자녀양육수당의 지급은 가족의 소득에 따라 결정
 - 자녀가 태어난 후 최초의 6개월에 대해서는 월 300유로의 전액을 지급
 - 이후 연간 순소득이 30,000유로를 초과(자녀가 1명인 결혼한 부부 기준)하거나 23,000유로를 초과(편부모 기준)하는 경우에는 자녀양육수당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 연간 순소득이 16,500유로를 초과하거나 편부모가정인 경우 13,5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생후 7개월부터는 지급액이 감소
- 월 450유로를 지급받는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연간 순소득금액이 22,086유로(자녀가 1명인 결혼한 부부 기준) 또는 19,086유로(편부모 기준) 이하

○ 자녀가 1명 증가할 때마다 소득한도액이 3,140유로 증가

7. 이탈리아

소득세제도를 통한 자녀세액공제와 가구소득 등을 고려한 재정지원제도가 공존

가.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액은 자녀의 수와 소득금액에 따라 결정

○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신청한 비율에 따라 금액을 나누어 공제

〈표 24〉 각 자녀 수별 총세액공제액(2004년)

(단위: 유로)

자녀의 수	공 제 액
1	516.46(소득금액이 36,151.98 이하)
	303.68(소득금액이 51,646 이하)
	285.08(소득금액이 51,646 이상)
2	1,032.92(소득금액이 41,316.55 이하)
	516.46(소득금액이 51,646 이하)
	285.08(소득금액이 51,646 이상)
3	516.46(소득금액이 36,151.98 이하)
	516.46(소득금액이 51,646 이하)
	285.08(소득금액이 51,646 이상)
4	2,065.84

주: 각각의 금액은 자녀별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임.

〈표 25〉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소득금액이 15,494유로 이하인
가정에 대한 자녀세액공제(2004년)

(단위: 유로)

자녀의 수	공제액
1	546.18
2	2,062.64
3	1,579.10
4	2,095.56

나. 가족수당(Family Allowance)

□ 가족수당제도에는 가족수당, 부녀자 수당, 3명 이상 18세 미만 자녀가정 지원제도 등이 있음.

- 가족수당은 근로자가정, 과거에 근로자였던 자로서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가정 및 실업수당을 지급받는 가정에 대하여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 부녀자 수당은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전업주부 혹은 실업상태의 부녀자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는 수당
-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가정에도 과세대상소득금액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급여를 지급

□ 가족수당(Family Allowance)

- 가족수당은 근로자가정, 과거에 근로자였던 자로서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가정 및 실업수당을 지급받는 가정에 대하여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 가족수당은 가구의 총과세대상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 소득금액 이하의 가정에 대하여 지급
 - 부양자녀가 없는 부부의 경우라 하더라도 저소득가정에 대해서도 가족수당이 지급
- 가족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지급액은 가족 구성원의 수와 가정의 과세대상소득금액에 의하여 결정

〈표 28〉 편부모에 대한 가족수당(월/유로)

Household Taxable Income	Number of family members						
	1	2	3	4	5	6	7
0~13,886.81	-	99.68	184.89	412.13	554.16	724.59	891.92
13,886.82~16,733.28	-	79.53	164.75	372.37	531.43	715.81	869.20
16,733.29~19,578.06	-	54.23	136.34	332.60	491.67	701.86	843.89
19,578.07~22,424.52	-	23.24	102.26	289.73	454.48	676.04	821.17
22,424.53~25,271.54	-	20.66	73.85	230.34	403.35	616.65	744.21
25,271.55~28,177.43	-	20.66	48.55	190.57	369.27	593.93	721.49
28,117.44~30,963.31	-	-	34.09	159.07	315.56	559.84	693.09
30,963.32~33,809.23	-	-	34.09	136.34	261.33	528.34	659.00
33,809.24~36,654.56	-	-	28.41	119.30	221.56	499.93	639.37
36,654.57~39,502.13	-	-	28.41	119.30	204.52	378.05	605.29
39,502.14~42,348.58	-	-	28.41	102.26	204.52	284.52	465.84
42,348.59~45,193.36	-	-	-	102.26	176.11	284.05	369.27
45,193.37~48,040.38	-	-	-	102.26	176.11	244.28	369.27
48,040.39~50,886.82	-	-	-	-	176.11	244.28	318.14
50,886.83~53,733.83	-	-	-	-	-	244.28	318.14
53,733.84~56,579.73	-	-	-	-	-	-	318.14

□ 부녀자 수당(maternity allowance):

- 부녀자 수당은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전업주부 혹은 실업상태의 부녀자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는 수당
- 부녀자 수당의 금액은 소득수준이 ISE¹¹⁾ 이하인 부녀자에게 연간 1,391.75유로를 지급
 - 2004년도를 기준으로 3인 가족을 기준으로 ISE가 29,016.13유로 이하인 가정에 대하여 지급
 -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기준금액은 조정되는데 4인 가족의 경우 35,159.52유로($29,016.13 \times 2.46 / 2.04 = 35,109.52$)가 기준금액

11) Indicator of Economic Situation: 가족구성원 모두의 과세대상소득금액에 순자산(부동산과 금융자산) $\times 0.2$ 의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 29〉 부양가족의 수에 따른 기준금액 조정 지수

가족의 수	지수
1	1
2	1.57
3	2.04
4	2.46
5	2.85

주: 가족의 수가 6명 이상인 경우에는 구성원 1인이 증가할 때마다 0.35를 더하며, 다음의 경우에 추가적으로 지수를 상향조정한다.

- 편부모 가정의 경우: 0.2
- 장애인 1인당: 0.5
-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정의 경우: 0.2

□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가정에 대한 급여

-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가정에도 과세대상소득금액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급여를 지급
 - 2003년 말 이후에 이미 자녀 1인이 있는 부녀자가 새로 아기를 출산한 경우 일괄적으로 1,000유로를 2004년 말까지 지급
- 18세 이하의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의 수당 지급액의 한도액은 월 116.06유로(연간 1,508.78유로)으로 하며 ISE가 일정금액 이하인 가정에 대하여 지급
 - 5인 가족을 기준으로 가족의 소득금액이 20,891.60유로 이하이어야 하며 가족 수에 따른 조정 방법은 부녀자 수당과 동일
- 연간 수당의 지급액은 ISE가 threshold에서 수당의 한도액(연간 1,508.78유로)의 두 배를 차감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1,508.78유로를 지급하며, ISE가 threshold에서 수당의 한도액의 두 배를 차감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threshold 금액에서 ISE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

Ⅲ. 시사점

- 자녀세액공제제도의 기본취지는 아동이 가구의 경제상황과 관계없이 일정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토록 하는 것과 보호자의 경제활동 참여유인을 높여주는 것임.
 - 아동의 생활수준 유지 목적에는 지원의 실효성이 높은 환급가능한 세액공제 방식이 소득공제보다 효과적
 - 보호자의 경제활동 참가유인 측면에서는 아동수당 등 일반재정지원 방식보다 세제와 연계된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 등이 효과적
 - 따라서 환급가능한 자녀세액공제제도는 지원의 효율성 및 경제활동유인 제공 측면에서 상대적 장점이 있는 제도

-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에서 유자녀 가구지원을 위해 세액공제 형태의 자녀지원 제도를 운영
 - 각 나라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정지원과 세액공제제도의 상대적 비중 조정
 - 재정지원 제도에 비해 조세제도와 같이 운영되는 세액공제제도가 비용 효율적

- 자녀세액공제제도의 도입 여부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재정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제도 간 역할 분담 및 효율성 추구 가능
 - 우리나라의 자녀관련 지원제도는 세법상의 지원제도와 재정정책적 측면의 지원제도로 나누어짐.
 - 세법상 자녀를 위한 지원제도는 인적공제, 6세 이하 직계비속에 대한 추가공제, 교육비 공제 등이 있으며 2007년부터는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를 통해 자녀 있는 가구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
 - 기타 재정정책적인 지원으로는 자녀에 대한 보육비 지원이 있음.
 - 2005년 기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60% 이하 가구에 대해 소득수준별 차등보육료를 지원

○ 현재까지 자녀 있는 가구에 대한 의미있는 소득지원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됨.

- 소득공제 형태의 지원제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면세점을 고려할 때 중하위 소득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자녀에 대한 보육비지원제도의 경우에도 확대되고 있으나 보육서비스의 제공이므로 실질적인 소득지원에는 한계

-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소득파악문제, 재정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원대상 및 규모는 소규모

□ 따라서 아동빈곤문제 완화를 위해 소득지원 목적의 세액공제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녀 있는 가구의 소득지원을 조세제도를 통해 실시할 경우, 기존의 근로장려세제를 중심으로 할 것인지 혹은 새로운 자녀세액공제를 신설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

○ 근로장려세제는 부모의 근로유인 제고를 통해 소득을 지원하여 일반적 자녀세액공제보다 비용-효율적(미국형)

- 아동빈곤문제에 대한 실질적 역할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초기 계획보다 급여인상 등 제도 세분화가 필요

-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설치한 근로장려세제의 점증구간(Phase-in)에서는 지원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문제 존재

○ 일반적인 자녀세액공제제도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한 장점(영국형)

- 도입예정인 근로장려세제와의 역할분담, 두 제도로 인한 상대적 복잡성 등의 문제 존재

참고문헌

- 김재진 · 권오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2.
- 김재진 · 박능후, 『한국형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 타당성 및 도입방안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박능후, 「EITC 특성과 소득보장기능」,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4월호.
- 최현수, 「영국의 근로보전세제의 개편 배경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 100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2.
- 빈부격차 · 차별시정위원회, 『외국의 근로소득보전세제 운영사례 기초연구』, 2005.
- Brewer, M. *The New Tax Credit*, Briefing Note 35, London: The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2003(www.ifs.org.uk/taxben/bn35.pdf).
- Browning, Edgar K. "Effects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on Income and Welfare", *National Tax Journal*, Vol. 48, No. 1, March 1995, pp. 23~43
- Dilnot, A. and Julian McCrae, *Family Credit and Working Families Tax Credit*, The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Briefing Note No. 3, 1999(<http://www.ifs.org.uk/bns/bn3.pdf>). pp. 1~17.
- Eissa, Nada and Hilary Williamson Hoynes,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the Labor Supply of Married Couples," NBER Working paper, Vol. 6856, 1998.
- Eissa, Nada and Jeffrey B. Liebman, "Labor Supply Response to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1, Issue 2, May 1996, pp. 605~637.
- Hotz, Joseph and John Karl Scholz,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NBER Working Paper No. 8078, 2001.
- Hotz, V. Joseph and John Karl Scholz,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NBER

- Working Paper, Vol 8078, Jan. 2001.
- Immervoll, H., Kleven, H. J., Kreiner, C. T., Saez, E., *Welfare Reform in European countries: a Microeconomic Analysis*, OECD DELSA/ELSA/WD/SEM(2005)7, 2005.
- Internal Revenue Service, *2005 Data Book*, 2005.
- Lefebvre, Pierre and Philip Merrigan, *Assessing Family Policy in Canada*, Institute for Research on Public Policy, Montreal, 2003.
- Murphy, Kevin E. & Mark Higgins, *Concepts in Federal Taxation*, Thomson, 2006.
- National Council of Welfare, *Child Benefits: Kids Are Still Hungry*, 1988.
- OECD, *Toward More and Better Jobs*, OECD Employment Outlook, 2004.
- Schmalbeck, Richard & Lawrence Zelenak, *Federal Income Taxation*, Aspen Publishers, 2004.
- The National Child Benefit, *National Child Benefit*, Progress Report: 2003 (<http://www.nationalchildbenefit.ca>).
- _____, "Canada Child Tax Benefit," 2004(<http://www.nationalchildbenefit.ca>).
- U.S. House Committee on Ways and Means, *Background Material and Data on Major Program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ommittee on Ways and Means*(2004 Green Book). Washington, D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04.
- Ventry, Jr. Dennis J., "The Collision of Tax and Welfare Politics: The Political History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1969-99", *National Tax Journal*, Special Issue,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volume LIII, No. 4, Part 2, 2000.

〈부록〉 기타 국가들의 자녀세액공제제도

1. 오스트리아

가. 가족수당

- 가족수당은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해서만 지급
- 지급금액의 산정
 - 가족수당의 지급액은 자녀의 수와 나이에 의하여 결정
 - 첫째 아이를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에 따른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음.

〈부표 1〉 자녀의 연령별 지급금액

나 이	금 액(유로)
0~3세	105.40
3~10세	112.70
10~19세	130.90
19~27세 ¹⁾	152.70

주: 1) 자녀가 학생이거나 직업교육과정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연간 과세대상소득금액이 41,400유로 이하이며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첫째 및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월별로 12.80유로를, 셋째 자녀 및 그 이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25.50유로를 추가로 지급
- 이와 별도로 부의 소득세로서 모든 자녀에 대하여 월 50.90유로를 지급

나. 자녀양육수당

- 200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자녀부터 육아휴직급여제도와 Part-time 수당을 대신하여 자녀양육수당을 지급

- 요 건
 - 자녀양육수당은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모든 부모(입양을 포함)에 대하여 다른 조건 없이 지급
 - 부녀자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녀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으나 부녀자수당이 자녀양육수당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은 지급받을 수 있음.
 - 자녀양육수당은 가정 내의 가장 어린 자녀에 대해서만 지급
 - 만약 기존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새로운 자녀가 태어나는 경우 기존의 자녀에 대한 수당 지급이 중지되고 새로 태어난 자녀에 대하여 수당이 지급

- 지급금액의 산정
 - 자녀양육수당의 금액은 자녀가 36개월이 되는 날까지 1일당 14.53유로로 함.
 - 쌍둥이의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쌍둥이의 경우에는 50%를 가산하며, 세 쌍둥이의 경우 100%를 가산)

다. 자녀세액공제

- 자녀 1인당 610.80유로를 공제하며 환급가능

2. 아일랜드

가. 가족수당

- 16세에서 19세까지의 각 부양자녀들이 풀타임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 각 자녀들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
- 수당금액의 산정
 - 첫째 자녀 및 둘째 자녀에 대하여 각각 한 달에 125.60유로를 지급하며 셋째 자녀 및 그 이후의 자녀들에 대하여 각각 한 달에 157.30유로를 지급
 - 2004년 4월부터는 첫째 자녀 및 둘째 자녀에 대하여 각각 한 달에 131.60유로와 셋째 자녀 및 그 이후의 자녀들에 대하여 각각 한 달에 165.30유로를 지급

나. 육아수당

- 현금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없으며 자녀수당을 통한 육아비용을 포함한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자녀에 관계된 모든 비용에 대해서 보조해 줌.
-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집에 거주하는 부모를 위한 가정양육공제(home-care allowance)는 구체적으로 자녀세액공제에서 보는 바와 같이 770유로까지 세액공제를 제공

다. 자녀세액공제

- 편부모가족공제: 편부모가정의 세액공제는 1,520유로
- 가정양육공제(Home-care tax credit) : 부모 중 1인이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770유로의 세액공제를 적용
- 이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자의 소득이 5,079유로 이하인 경우(다만 장애인과 경로자인 경우는 제외) 770유로 전액을 지급

- 소득금액이 5,080유로 이상 6,620유로 이하인 경우 소득금액의 증가에 따라 일정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

3. 스페인

가. 가족수당(Family benefits)

□ 요 건

- 가족수당의 수령을 위해서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18세 이상인 자로서 장애의 등급이 65% 이상인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 가족수당 금액의 산정

- 18세 미만의 장애가 없는 자녀에 대한 수당은 소득금액에 따라 결정
- 2004년도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은 부양자녀의 나이와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음.

- 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

- a) 장애아동이 아닌 경우: 24.25유로/월(291유로/년)
- b) 장애등급이 33% 이상인 경우: 48.47유로/월(연간 581.65유로/년)

- 자녀가 18세 이상인 경우

- a) 장애등급이 65% 이상인 경우: 268.09유로/월(연간 3,217.08유로/년)
- b) 장애등급이 75% 이상인 경우와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402.14유로/월(4,825.68유로/년)

- 장애아동에 대한 모든 지원수당은 가족소득금액의 수준에 관계없이 결정

- 장애아동이 아닌 일반 아동의 경우

총지원수당의 수령액은 8,495.69유로/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둘째 자녀부터 자녀가 한 명씩 증가할 때마다 한도액은 기본한도액의 15%(금액: 1,274.35유로)씩 증가

- 수당의 수령액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게 되며, 장애아동이 아닌 자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공제액의 한도도 증가

〈부표 2〉 자녀 수에 따른 소득요건 및 수당한도

(단위: 유로)

부양자녀의 수	수령가능한 수당의 한도액	소득의 한도액
1	8,495.69	8,786.69
2	9,770.04	10,352.04
3	11,044.39	11,917.39
4	12,318.74	13,482.74

나. 자녀양육공제

- 25세 미만의 자녀에 대하여 각 자녀별로 다음의 표에 나와 있는 금액을 공제

〈부표 3〉 자녀별 세액공제금액

(단위: 유로)

자녀	공제 금액
첫째 자녀	1,400
둘째 자녀	1,500
셋째 자녀	2,220
넷째 자녀	2,300

4. 포르투갈

가. 가족수당(Family benefit)

요건

- 급여에는 일반 구성(General Scheme: 분담방식(contributory))과 비분담식(non-contributory) 구성이 있음.

- 일반구성의 수당의 요건: 신청서의 제출 또는 수당의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결정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체크한 날의 2월 이전에 12개월 동안 수익자의 이름으로 보상대상등록자명단(register of the remuneration)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비분담식 수당(non-contributory allowance)의 요건: 비분담식 수당은 다음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있는 자에게 지급
 - 일반조건: 세대주의 소득금액이 최저임금의 40% 이하일 것
 - 특례조건: 위기상황 또는 사회 전체가 침체기인 경우 가구 구성원의 1인당 소득금액이 최저임금의 30% 최저임금 이하일 것

□ 가족수당 관련 법령의 개정

- 2004년 10월 1일부터 가족수당이 변경됨.
- 자격요건
 - 내국인 여부 및 국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포르투갈에 거주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함.
 - 아동의 보호자는 최고수준의 소득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아동은 16세 이하이어야 하며, 만약 17세 이상 24세 이하의 아동이 학교(school) 또는 대학(university)에 등록되어 있거나 전문직업교육 또는 기타 교육과정에 있는 경우와, 사회보장급여(social benefit)를 지급받는 장애 아동이어야 함(아동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한 경우 최대 3년까지 기간의 연장이 가능).

□ 급여 금액의 계산

- 급여는 연령 및 소득에 따라 결정됨.
- 자녀의 연령이 12개월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누고 소득수준에 따라 6개의 그룹으로 분류함.
- 소득수준은 총근로소득, 사업소득, 자본 및 부동산소득, 연금 및 노조 또는 고용보험 등으로부터 받는 실업급여와 같은 기타 다른 수당을 합산하여 계산

- 다만 가족보호시스템으로부터 수령하는 급여는 제외
- 합계금액을 자녀의 수에 1을 더하여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의 표와 같이 소득계급을 구분

〈부표 4〉 소득계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

소득계급	최소임금과 비교
1계급	0.5 NMW ¹⁾ 이하
2계급	0.5NMW 초과 1NMW 이하
3계급	1NMW 초과 1.5NMW 이하
4계급	1.5NMW 초과 2.5NMW 이하
5계급	2.5NMW 초과 5NMW 이하
6계급	5NMW 초과

주: 1) NMW: National Minimum Wage

소득계급별 급여지급액

- 자녀의 나이에 따라 소득계급별 급여지급액은 다음의 표와 같음.

〈부표 5〉 자녀의 연령별 및 소득계급별 급여지급액

(단위: 유로)

소득계급	아동의 연령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아동의 연령이 12개월 초과인 경우
1계급	1,440	360 ¹⁾
2계급	1,200	300
3계급	960	276
4계급	600	240
5계급	360	120

주: 1) 6세 이상 1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는 390유로를 지급함.

나.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기본세액공제

- 포르투갈의 기본공제는 자녀의 유무와 배우자의 여부에 따라 결정
- 공제 내용
 -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하여 각각 182.80유로를 공제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219.36유로를 공제
 - 편부모 가정의 경우 자녀 1인당 292.48유로를 공제
 - 양친 가정의 경우에는 자녀 1인당 146.24유로를 공제

5. 노르웨이

가. 가족수당(Family Benefit)

수령요건

- 가족수당은 부양자녀가 있는 가족에 한하여 지급
- 여기서의 부양자녀의 범위는 18세 이하의 아동으로 함.

수당금액의 산정

- 총지급수당액의 산정
 - 연간 부양자녀 1인당 11,640크로네를 지급한다. 편부모의 경우에는 부양자녀의 인원 수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받음.
 - 3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고, 근로소득금액이 기본금액의 1/2 이하인 편부모에 대하여는 연간 7,920크로네를 지급
- 수당의 지급은 부양자녀 한 명에 대하여 가구 단위로 이루어짐.

나. 자녀양육수당(Child-care benefits)

- 1세에서 2세의 아동으로서 유치원에 나가지 않는 자녀에 대하여 연간 자녀 1인당 43,884크로네를 지급
- part-time으로 공립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그 지급액은 다음과 같음.
 - 주당 8시간 이하인 경우: 43,884크로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주당 9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인 경우: 43,884크로네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 주당 17시간 이상 24시간 이하인 경우: 43,884크로네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 주당 25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인 경우: 43,884크로네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주당 33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액 없음.

다. 편부모 가정에 대한 수당(Lone Parent Benefits)

- 편부모는 국민보험급여(National Insurance Scheme Benefit)의 수령자격을 가짐.
 - 수당에는 무상이전급여(Transitional benefit), 교육수당 및 자녀가 요건을 갖춘 직업전문과정 또는 교육과정에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추가적인 아동 보호수당(supplement child care benefit)이 포함
- 자격 요건
- 미혼, 이혼 또는 별거중인 경우로서 자녀의 다른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Lone Parent Benefit의 대상이 됨.
- 급여액의 계산

무상이전급여(Transitional benefit)

- 무상이전급여의 한도액은 기본금액(the basic amount)¹²⁾의 1.8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004년을 기준으로 108,739크로네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임금과 실업보험금이 기초금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0%로 차감.

아동보육급여(child care benefit)

- 만약 편부모가 정규교육 또는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에, 그 편부모는 아동보육 급여(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환급가능하다)의 대상으로 함.
- 이 급여는 편부모의 가장 어린 자녀가 4학년을 마칠 때까지 지급함.

〈부표 6〉 2004년 기준 편부모가정에 대한 아동보육급여의 한도액

(단위: 크로네)

자녀의 수	아동보육급여 한도액
자녀가 1명인 경우	32,052
자녀가 2명인 경우	41,820
3명이 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47,388

- 실제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액은 기초금액의 64% 수준
- 만약 편부모가 기초금액의 6배에 해당하는 소득을 얻는다면 아동보육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 또한 수령한 급여액에 따라 아동양육비용 공제액이 달라짐.
- 아동양육비용공제는 수령한 급여액 및 실제 지출된 아동양육비용에 따라 결정
- 아동양육비용은 25,000크로네/30,000크로네¹³⁾를 한도로 하여 공제

12) 2004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58,778크로네

13) 자녀가 한 명인 경우 25,000크로네,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 30,000크로네

라. 아동양육비용의 공제

- 12세 이하의 아동의 양육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증빙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소득금액에서 25,000/30,000크로네를 한도로 공제
- 편부모가정이 무상이전급여만이 수령 가능한 경우에, “세액한도(tax liability limitation schedule)”의 적용을 받음.
- 요건을 갖춘 경우에 세액한도의 적용을 받을 경우 88,600크로네 이하의 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함.
-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5%의 일반 세율을 적용

6. 슬로바키아

가. 가족수당

- 가족수당에 자녀세액공제, 부모세액공제 그리고, 정부의 기타 사회보장성 공제와 정부의 사회보장성 수당이 포함
- 이 세액공제는 법률 No 595/2003 Coll의 33에 근거를 두고 있음.
- 소득세에 대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
- 이것은 근로자인 부모에 대한 세액공제
- 이 세액공제는 개인의 한 달 동안의 최저임금의 반 내지 한 해 최저임금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소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
- 만약 납부해야 될 금액이 공제액이나 한 달 동안 부양자녀들의 인원 수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보다 작다면 과세관청은 세액공제의 금액까지 환급(부의 소득세)

□ 요 건

- 2004년 1월 1일부터 자녀세액공제는 자녀세액공제에 관한 Act No 600/2003

Coll과 법률 No 281/2002 Coll을 수정한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 No 461/2003
과 법률 No 658/2002 Coll에 규정

- 자녀수당의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 부양자녀에 대하여 자격 있는 사람이 돌보고 있어야 함.
 - 부모와 부양자녀가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인 거주지가 슬로바키아 내에 있어야 함.
- 자격 있는 개인이 자녀수당을 요구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 부양자녀의 부모(입양부모도 포함)
 - 부양자녀를 부모가 돌보는 합법적인 권한을 법률적으로 위임받은 사람
 - 부양자녀의 부모가 없는 법적인 나이의 부양자녀
 -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의무를 제공받고 있는 법적인 나이의 부양자녀
 - 결혼한 법적인 나이의 부양자녀
 - 이혼한 법적인 나이의 부양자녀

□ 자녀수당의 지급액

- 자녀수당은 단일률(flat-rate)로 월단위로 모든 부양자녀를 위해 제공
- 자녀수당은 자녀 1인당(2004.1.1부터) 한 달에 SKK 500의 일정한 금액을 지급
2004. 9. 1부터 월별로 자녀 1인당 SKK 540를 지급

나. 육아수당

- 부모수당은 법률 No. 280/2002 Coll에 의해 제공

□ 수령조건

- 수당을 위한 수령조건에 대한 자격 있는 개인의 자격조건
 -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아이에 대하여 부모의 적절한 보호기간이 아이의 나이가 적어도 3살이 되거나 6살이 될 때까지일 때
 - 자격 있는 개인의 거주지가 슬로바키아에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있을 것

- 부양자녀의 거주지가 슬로바키아에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있을 것
- 부모의 육아보호의 여건이나 자격요건이 모든 조건에 만족되어야 함.
- 부모가 소득활동 및 중등교육 내지 대학과정 동안에 다른 사람에 의한 육아를 확보하고 탁아소, 유치원 또는 그 동등한 시설에 아이를 두지 않을 것
- 아이는 일정한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외래환자에 대한 치료 및 재활시설에 출석할 것
- 오랜 기간 동안 건강상태가 안 좋은 아이가 하루에 4시간 범위 내의 재활 탁아소, 유치원, 사회서비스시설 또는 동등한 시설에 출석할 것
- 아이가 탁아소, 유치원 또는 그 동등한 시설에 출석하는 시간이 하루에 4시간 범위 내에 있고, 두 부모 또는 한 부모가 행위무능력자일 것
- 아이가 한 달 동안 연속적으로 3일 이내에 건강상의 이유로 건강보호기관에 있을 것
- 적당한 보호는 아이에 대하여 교육, 충분한 영양, 위생과 치료와 예방 검사에 신경쓰고, 아이의 육체적이고, 정신개발에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함.

□ 수당금액의 계산

- 2002. 11. 1부터 적용되고 법률 No, 280/2002에 의해 계산
- 부모세액공제의 기본금액은 SKK 3,790
- 부모세액공제의 부분금액은 SKK 1,200
- 2004. 9. 1부터 부모세액공제의 금액은 노동, 사회행동 그리고, 가족사항 관련 SR No. 415/2004 Coll.에 의한 기준에 의해 바뀌었음.
- 부모세액공제의 기본금액은 SKK 4,110
- 부모세액공제의 부분금액은 SKK 1,300

다. 자녀세액공제

- 이전의 자녀세액공제는 한 아이당 한 달에 SKK 400를 받는 연금액 SKK 4,800의 세액공제로 대체

- 각 부양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으로부터 공제되면 만약 납부할 금액에 초과하는 이 금액은 납세자에게 지급
- 이 세액공제에 대한 적절한 요건을 가지려면, 부모는 최소한 200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SKK6,080(2004. 10. 1 SKK6,500)(총금액은 최소한 SKK 445,320)인 최저임금의 6배에 해당하는 연소득이 있어야 함.
- 자녀세액공제는 두 배우자 중 하나에게 완전하게 주어진 아이에 대해 주어진 총금액을 분할하거나 한 배우자에 의해 공제받게 함.
- 세액공제의 목적을 위한 부양자녀의 자녀의 정의는 이전의 자녀세액공제에 대한 정의와 같음.
- (자녀는 18살 이하이거나 만약 풀타임의 교육을 받거나 국가장애연금을 받지 못해 고통을 받는다면 26.5살 이하여야 함)

7. 헝가리

가. 가족지원수당

□ 범 위

- 헝가리의 가족지원 시스템은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함.
- 그 지급 대상에는 헝가리 국적을 가진 자, 장기체류자, 이주 노동자, 망명자까지 모두 포함
- 가족지원수당의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연령(23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모(아동의 수양부모나 양부모를 포함한다)나 보호자(아동보호기관의 관리인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이어야 함.

□ 종 류

- 헝가리의 가족지원수당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들이 있음.
 - 가족 급여(family allowance)

- 아동양육 급여(child home allowance)
- 육아지원(child raising support)

□ 요 건

- 가족지원수당을 받기 위한 공통적인 요건은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것
- 가족지원수당은 자녀가 출생한 때부터 의무교육이 끝날 때까지(보통 0~16세 까지) 지급되며, 그 이후 중등교육과정 및 직업교육과정에 있으며 23세 이하 인 경우에 지급

□ 급여액의 계산

〈부표 7〉 가족급여액(Amount of Family Allowance)

(단위: HUF)

자녀가 1인인 가정	4,900
자녀가 1인인 편부모 가정	5,700
자녀가 2인인 가정	아동 1인당 5,900
자녀가 2인인 편부모가정	아동 1인당 6,900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아동 1인당 7,500
자녀가 3명 이상인 편부모 가정	아동 1인당 8,000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가 있는 가정	13,300
아동이 수양가정에서 살고 있거나, 수양부모와 함께 생활 하는 경우	6,900

주: 7월에 지급되는 급여액은 타월에 지급되는 금액의 두 배로 한다. 급여는 가족급여지급사무소 또는 헝가리 주 재무성의 지역장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나. 자녀양육수당

□ 종 류

- 출생급여(birth grant)
 - 자녀의 출생에 대하여(입양을 포함한다) 지급하는 일반적인 지원
 - 임신-출산 급여(pregnant-confinement benefit)

- 보험방식(insurance-based)으로 지급되는 급여로 24주간 지급되는 급여(출생 전 4주와 출생 후의 20주 동안 지급받는 방식과 출생 후 24주간 지급받는 방식 중 산모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지급)

○ 자녀보육비(child care fee)

- 2003년 1월 1일에 도입되었으며 출생한 자녀가 두 살이 될 때까지 지급되는 보험방식의 급여
- 가정 내 육아에 대한 지원급여(child home care allowance)
- 모든 거주자에 대하여 정률(flat-rate)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며 이것은 조부모(grandparent)도 수령이 가능
- 이것은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지급되는데, 쌍둥이의 경우에는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지급
- 또한 자녀에게 장애가 있거나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자녀가 10세가 될 때까지 지급됨.

○ 자녀양육지원(child raising support)

- 미성년자(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 대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정률로 지급
- 자녀양육지원은 가장 나이가 어린 자녀가 3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부터 8세가 될 때까지 지급

○ 정기자녀보호지원(regular child protection support)

- 공공부조(social assistance-based)방식으로 지방정부에 의하여 지급
- 이것은 1인당 소득이 노후연금(old-age pension)의 최저금액 이하인 가정의 자녀들의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 비정기자녀보호지원(irregular child protection support)

- 저소득 가정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 자녀양육수당의 산정

- 출생급여(birth grant)

- 자녀 1인당 노후연금 최소액의 225%를 지급하며 쌍둥이의 경우에는 자녀 1인당 노후연금 최소액의 300%를 지급
- 임신-출산 급여(pregnant-confinement benefit)
 - 전년도 일일평균 총소득의 70%를 지급
- 자녀보육비(child care fee)
 - 전년도 일일평균 총소득의 70%를 지급하며 HUF 83,000을 한도로 함.
 - 가정 내 육아에 대한 지원급여(child home care allowance)
 - 노후연금 월지급액의 최소액(HUF 24,700)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며, 쌍둥이의 경우 그 금액의 두 배를 지급
- 자녀양육지원(child raising support)
 - 자녀의 수와 관계 없이 최소 노후연금 지급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
- 정기자녀보호지원(regular child protection support)
 - 월별로 HUF 5,104를 지급
- 비정기자녀보호지원(irregular child protection support)
 - 각 지방정부가 지급 금액을 결정

다. 자녀세액공제(tax credit for children)

- 헝가리의 자녀세액공제는 자녀의 수에 따라 그 공제액이 달라짐
 - 자녀가 1인인 경우: 자녀 1인당 HUF 3,000/월(총액 HUF 3,000/월)
 - 자녀가 2인인 경우: 자녀 1인당 HUF 4,000/월(총액 HUF 8,000/월)
 -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자녀 1인당 HUF 10,000/월
- 자녀세액공제는 부모 중에 한 명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부간에 자녀세액공제금액을 나누어 공제를 적용받는 것도 가능

세법연구 06-08

주요국의 자녀세액공제와 시사점

2006년 11월 23일 인쇄

2006년 11월 30일 발행

저 자 전병목·조찬래

발행인 최 용 선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TEL: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인쇄 고려문화사

© 한국조세연구원 2006

ISBN 89-8191-330-7

* 잘못 만들어진 책을 바꾸어 드립니다.